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안전모·안전대·안전화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제1항 본문·제1호~제3호 원문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**근로자 수 이상**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3., 2024. 6. 28.>

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모
2. 높이 또는 깊이 **2미터 이상**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: 안전대(安全帶)
3. 물체의 낙하 · 충격, 물체에의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(帶電)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화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보안경·보안면·절연용 보호구

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제1항제4호~제6호 원문

4.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보안경
5.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보안면
6.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: 절연용 보호구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방열복·방진마스크·방한 보호구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제1항제7호~제9호 원문

7.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: 방열복
8. 선창 등에서 분진(粉塵)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: 방진마스크
9. 섭씨 **영하 18도 이하**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: **방한모** · **방한복** · **방한화** · **방한장갑**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운행용 안전모·지급 수량·착용 의무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제1항제10호·제11호·제2항 원문

10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· 배달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8호가목5)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

11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· 배달하기 위해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

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**착용하여야 한다**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주요 수치·운행용 안전모·원문 전체

안전대 · 추락 위험

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

높이뿐 아니라 깊이도 확인

급냉동어창 하역

영하 18℃ 이하

방한모·방한복·방한화·방한장갑

보호구 지급 수량

작업자 수 이상

사업주 지급·착용 조치 + 근로자 착용

운반·수거·배달 운행용 안전모 · 연결 기준을 풀어 읽기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쉬운 요약 · 아래 제32조 원문과 구분하세요.

1. 좌우·상하 충분한 시야
2. 풍압에도 앞창이 시야를 가리지 않음
3.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음
4. 충격 흡수성·내관통성
5. 충격에도 쉽게 벗어지지 않게 고정
6. **무게 2kg 이하**
7.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
8. 뒷부분 야간운행용 반사체

이륜차·원동기장치자전거: 위 8가지 기준 모두 / 자전거등: 1·3·4·5·6·7 기준

두 경우 모두 무게 2kg 이하. 현장용 안전모와 운행용 안전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.

연결 기준: 시행 2026.8.24. / 그림의 착용·배치·인원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**근로자 수 이상**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3., 2024. 6. 28.>

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모
2. 높이 또는 깊이 **2미터 이상**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: 안전대(安全帶)
3. 물체의 낙하 · 충격, 물체에의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(帶電)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화
4.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보안경
5.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보안면
6.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: 절연용 보호구
7.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: 방열복
8. 선창 등에서 분진(粉塵)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: 방진마스크
9. 섭씨 **영하 18도 이하**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: **방한모 · 방한복 · 방한화 · 방한장갑**
10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· 배달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8호가목5)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
11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· 배달하기 위해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

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 [보호구의 지급 등] · 보호구 명칭 · 작업별 착용 예시

안전모 · 보안경
안전대(전신형) · 안전화



보안면
용접 작업의 예



절연용 보호구
절연장갑 · 절연화 등의 예



방열복



승차용 안전모
이륜차·원동기장치자전거



방진마스크



안전모
자전거등 운행용



방한모 · 방한복
방한화 · 방한장갑



작업조건에 맞게 선택
모두 동시에 입는 뜻이 아님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· 제1항 본문·제2항 원문 (전체 원문은 5쪽)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**근로자 수 이상**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3., 2024. 6. 28.>

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**착용하여야 한다**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